

담배자동판기 이용, 04.7.29부터 성인인증 필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2004년 7월 29일부터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소년들은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고(03.7.29),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거래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법에서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라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 2004년 7월 29일 공포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청소년에 대해 담배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이 내려진다.

우리나라 담배자동판매기는 금연운동의 강화와 규제 등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3년말 현재 약 3천여 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참고 1.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검토보고서>

1. 추진배경

-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황우여의원 발의, '03.7.29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사항



2. 외국의 사례

-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
- ※ 미국 :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동시에 넣어 18세 이상임을 증명, LA 캘리포니아, 클리브랜드 오하이오에 설치 ('02)
- ※ 일본 : 비접촉식 IC카드, 운전면허증 이용, 치바현(千葉縣) 2002년 시행, 2008년 전국자판기 교체 예정

- ※ 독일 : 생년월일이 저장된 카드 이용, 독일전역에 2002년부터 시행, 2007년까지 완료 예정
- ※ 스위스 : 특수 컴퓨터칩 이용, 보건청 시행으로 스위스 전역에 2002년부터 시행

3. 우리나라 현황

담배자판기 설치 현황

- '03년 현재 담배자판기는 3천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

〈KT&G가 운영하는 연도별 담배자판기 운영추이〉

(단위 : 대)

1997	...	2000	2001	2002	2003
4,224	...	3,230	3,114	2,922	2,700

※ 개인이 운영하는 담배자판기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전국적으로 약 400여대가 운영중인 것으로 추정됨

성인인증장치 업체 현황과 인증방법

현재 국내의 성인인증장치 제작업체(9개)는 신분증과 지문을 이용하는 방법을 채택

4. 성인인증방법의 분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의한 방법

- 현재 기술적으로 유효하며, 경제성면에서 가장 우수
 - 신용카드 등과 같이 온라인 장치가 불필요
- 위조·도용이 용이한 단점
 - 그러나, 일부 제품은 위조 신분증에 대해서도 최하 90% 이상 식별 가능
 - 주민증 삽입과 동시에 뒷면에 등재된 지문을 입력하는 대안
 - 이 경우, 자판기 가격 추가 상승(50만원), 지문인식의 잦은 오류로 인한 구매자 불편 등 단점

금융신용거래장치(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방법

-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위조·도용은 신분증에 비해 어려움
- 조회와 결재를 위하여 금융전산망 접속 필요
 - 망사용료, 신용카드수수료 등 판매업자 부담 발생
 - 개인금융정보의 유출 등 악용 가능성

생체정보(지문, 홍채)에 의한 방법

-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위조·도용 가능성 매우 낮음
- 지문과 홍채를 사전에 등록하거나, 행자부 주민전산망에 연결하여 주민등록부 지문과 Matching해야 하므로,
 - 개인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 망사용료 등 추가비용 발생
- 성인전용 담배카드에 의한 방법 (일명 '그린카드')
 - 성인에게만 판매하는 충전식 또는 비충전식 카드방식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위조 · 도용 가능성 낮음
 - 카드발행 주체를 정해야 하며, 이를 성인에게만 판매토록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별도 입법조치 필요
 - 판매금지 유해물질 →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카드나 쿠폰을 포함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 기술적으로 유효하고 경제적이나, 타인 주민번호의 도용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의 담배판매 금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움

5. 검토의견

- '신분증에 의한 방법'과 '금융신용거래장치에 의한 방법'이 타당하며, 다음 3가지 원칙에 따라 검토함
 - ① 청소년인지의 여부를 유효하게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 ② 개인정보의 유출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 ③ 판매업자 등 관련 주체의 부담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참고 2.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 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5조의2(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참고 3. 흡연율 통계>

○ 20세 이상 성인

(단위 : %)

구 분	1992년	1995년	1999년	2002년	2003년
남 자	73.2	73.0	67.8	60.5	56.7
여 자	6.1	6.0	4.6	6	3.5

※통계청, 사회통계조사('00), 한국갤럽조사('03)

○ 중·고등학생

(단위 : %)

구 分		1997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남 자	중 학 생	3.9	5.6	7.4	6.0	3.5	2.8
	고등학생	35.3	32.6	27.6	24.8	23.6	22.1
여 자	중 학 생	3.9	3.1	3.2	2.0	0.9	2.3
	고등학생	8.1	7.5	10.7	7.5	7.3	6.8

※통계청, 사회통계조사('00), 한국갤럽조사('03)

- 흡연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사회·문화적인 이유로 여성흡연율과 청소년흡연율이 과소 측정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성인여성흡연율과 청소년흡연율은 이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됨